

영등포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2. 2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2호로 2011년 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의 의뢰 (안 제4조)

-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2)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3)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협약체결 (안 제5조)

- 1)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안 제6조)

- 1)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 개인정보 유출, 목적 외 사용금지,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 금지
- 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보관

라. 지도·감독 (안 제7조)

- 1)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받고 검사 할 의무
- 2)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할 경우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 7.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이었지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을 두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입법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법규체계와 형식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내용면에서도 상위 법규의 범위 안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조사 의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사항】

- 우리구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 2002. 2. 1일 부터 현재까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한 비영리 법인인 (사)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체부담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 우리구 2010. 12월말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수 : 1,341건
 - 연평균 지정 : 약 250건

참 고 자 료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0.3.3>
-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3.3>
-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3.3>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10.3.3>
- ⑨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

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0.3.3>

- ⑩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3>
-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3.3>
-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3>
-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3.3>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